

## 제24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99호
- 나. 제출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4. 4. 15.
- 라. 회부일자 : 2024. 4. 15.

## 2. 제안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3. 6. 9. 공포 및 2023. 7. 10. 시행) 및 「지방자치법」 개정(2021. 1. 12. 공포 및 2022. 1. 13.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 구 주민자치 여건을 반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 1) 자치위원 선정방식의 간소화 및 구청장, 동장, 주민자치회에 다양한 계층 참여 노력 의무 부여(안 제11조제1항, 제3항)
- 2) 자치위원에게 신문구독 지원 근거 마련(안 제15조 단서 신설)
- 3) 연임한 위원의 경우 2년간 자치위원 선정 제한(안 제16조)
- 4) 임원회의, 민관협력회의를 신설하고 회의 참석수당 지급범위 확대(안 제21조)
- 5)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용 물품 제공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 신설)
- 6) 주민자치운영협의회 위원의 자격에 주민자치 및 사회복지 전문가 추가(안 제26조)

#### 나.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비

- 1) 프로그램 개설시 주민의견을 수렴(안 제36조)
- 2)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의 관리·운영 주체 정비(안 제36조 및 제37조)
- 3) 자치회관 연간운영계획 보고시기 12월로 변경(안 제43조제1항)
- 4) 수강료 감면 대상자를 관내 주민으로 하고, 1인당 감면 프로그램 수를 1개로 규정(안 별표2)

## 다. 현재 여건을 반영한 조문 변경

- 1)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8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
- 2) 자치계획 내용 및 주민자치회의 기능 정비(안 제5조)

##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구 주민자치 여건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 안 제11조 제1항, 제3항에서는 자치위원 선정방식을 기존 공개모집+단체추천에서 공개모집으로 간소화하고 청년 및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5조에서는 자치위원에게 신문구독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안 제16조에서는 기존 연임 임기 종료 후 신규 지원이 가능했던 것을 2년 경과 후에 신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함.
  - 안 제21조에서는 회의 종류를 현재 운영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 안 제23조의 2에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용 물품 제공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안 제26조에서는 주민자치운영협의회 구성 시, 동별 주민자치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에 주민자치 및 사회복지 전문가를 추가하여 규정함.
  - 안 제36조에서는 프로그램 개설시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 하고, 자치회관 시설관리 주체를 동장으로 규정함
  - 안 제37조에서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를 주민 자치회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별표2에서는 수강료 감면 대상자를 관내 주민으로 하고, 1인당 감면 프로그램 수를 1개로 규정함.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체회의 수당과 봉사 활동비 외에 다른 대가가 없으며, 주민자치회 전환 후 지역의제 발굴 및 분과활동과 총회 준비 등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의 활동이 급증함에 따라 통장과 비교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활동에 대한 보상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 이에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분과회의 참석수당 및 신문구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주민자치회 위원 현황 1부

3.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지원 현황 1부. 끝.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514호, 2023. 7. 4., 타법개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붙임 2

## 주민자치회 위원 현황

###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추진 과정

- 2023. 11. 7. ~ 11. 19 : 주민자치학교 운영 (281명 이수)
- 2023. 11. 23. ~ 11. 27 : 동별 위원추첨위원회 구성
- 2023. 11. 27. ~ 12. 5 : 동별 위원추첨위원회 개최(449명 선정)
- 2023. 12. 14 : 위원 위촉

### □ 주민자치회 위원 분석 내용

#### ○ 동별 위촉 인원

(단위:명 / 2024. 3월말 기준)

구분	계	가산	독산1	독산2	독산3	독산4	시흥1	시흥2	시흥3	시흥4	시흥5
위촉	449	50	44	42	39	46	46	50	47	37	48
현재	432	50	44	41	37	37	45	50	46	34	48

☞ 50명 정원 총족 주민자치회 : 가산동, 시흥2동.

#### ○ 성별 및 연령, 분야별 구성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성별 구분		연령별							부문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일반	단체
위촉	449	123	<b>326</b>	1	7	32	97	231	76	5	312	137
		27.4%	<b>72.6%</b>	0.2%	1.6%	7.1%	21.6%	51.4%	16.9%	1.1%	69.5%	30.5%
현재	432	125	<b>307</b>	0	7	29	96	217	79	4	297	135
		29%	<b>71%</b>	0%	2%	7%	22%	50%	18%	1%	69%	31%

☞ 위촉일 기준 40대이하 40명 (8.9%) / 50대이상 409명 (91.1%).

#### ○ 4기 위원 주민자치위원 위촉 경력(위촉기준)

(단위 : 명)

위촉경력	계	가산	독1	독2	독3	독4	시1	시2	시3	시4	시5	
계	<b>449</b>	<b>50</b>	<b>44</b>	<b>42</b>	<b>39</b>	<b>46</b>	<b>46</b>	<b>50</b>	<b>47</b>	<b>37</b>	<b>48</b>	
신규	231	35	13	18	24	23	23	34	26	21	16	
연임	<b>216</b>	<b>15</b>	<b>31</b>	<b>24</b>	<b>15</b>	<b>23</b>	<b>23</b>	<b>16</b>	<b>21</b>	<b>17</b>	<b>32</b>	
위촉경력	<b>4회(1~4기)</b>	<b>94</b> <b>(21%)</b>	<b>3</b> <b>(6%)</b>	<b>12</b> <b>(27%)</b>	<b>8</b> <b>(19%)</b>	<b>16</b> <b>(41%)</b>	<b>11</b> <b>(24%)</b>	<b>17</b> <b>(37%)</b>	<b>3</b> <b>(6%)</b>	<b>9</b> <b>(19%)</b>	<b>7</b> <b>(17%)</b>	<b>8</b> <b>(17%)</b>
	3회	60(13%)	8	6	8	6	6	6	3	10	3	4
	2회	127(28%)	9	20	16	5	12	8	17	5	12	23
	1회(4기)	168(37%)	30	6	10	12	17	15	27	23	15	13

※ 3기 신규 위원 중 보수교육 미이수, 개인사정 등으로 연임하지 않고 4기 신규로 위촉되는 경우가 있음.



□ 서울시 자치구 주민자치회 실시 현황

주민자치회 실시 자치구	주민자치위원회 실시 실시구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위원회	미구성
16개 구	3개 구	5개 구	1개 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중구, 서초구, 강남구	구로구(23년), 종로구, 송파구, 용산구, 마포구(24년)	서대문구

□ 서울시 자치구 주민자치회 실시 조례 상 위원 임기 분석

임기 제한(최대 6년)	한차례 연임 후 2년 휴지기	1회 연임 후 최초 선정 방식	2회 연임 후 최초 선정방식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강북구 ※ 우리구 개정안과 동일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양천구 <sup>※</sup> , 영등포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기는 2년</li> <li>- 두 차례만 연임</li> <li>- 도봉구 추첨</li> <li>  은평구 미추첨</li> <li>※ 6년 이후 위원 불가</li> </ul>	연임한 위원은 2년 이내 위촉 금지	연임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 부여	

※ 모든 자치구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양천구 : 위원 모집 정원 미달의 경우 연임위원 중 선정 가능하고 임기를 2년으로 제한

□ 동별 자치회관 수강생 감면자·관외주민 현황

(단위 : 명 / 2024. 2월말)

동명	수강생			감면·면제자				중복 감면자	운영세척상 감면규정
	전체	관외	비율	전체 (괄호:면제)		관외			
				명	비율	명	비율		
계	4,052	185	5%	2,933 (411)	72%	104	4%	117	1인당 1개 : 5동 1인당 2개 : 4동 1인당 3개 : 1동 관외주민 제한 : 3동
가산동	155	48	31%	101 (9)	65%	31	31%	7	1인당 2개로 제한
독산1동	230	21	9%	152 (7)	66%	-	-	-	관내 주민
독산2동	322	1	-	158 (36)	49%	-	-	-	관외 제한은 없음
독산3동	500	42	8%	406 (72)	81%	38	9%	2	1인당 2개로 제한
독산4동	588	5	1%	437 (44)	74%	-	-	-	관내 주민, - 세척상 50%감면 : 2개 / 100% 감면 1개 - 실제 1인 1개로 제한 ※ 회장단 회의때 결정한바를 따름
시흥1동	396	35	9%	307 (31)	78%	29	9%	24	1인당 2개로 제한
시흥2동	542	6	1%	381 (64)	70%	1	-	-	관외 제한은 없음
시흥3동	225	20	9%	153 (5)	68%	-	-	26	관내 주민, 50%감면 : 2개/ 100% 감면 1개
시흥4동	463	3	1%	348 (67)	75%	2	1%	-	
시흥5동	631	4	1%	490 (76)	78%	3	1%	58	1인당 3개

## □ 2023년 동별 자치회관 운영현황

### ○ 일 평균 수강 현황

(단위 : 개, 원, 명, % / 2023. 12. 기준)

동명	프로그램					체력단련실				
	강좌수	월수강료	수강생 수	감면자 수	감면자 비율	강좌수	월수강료	수강생 수	감면자 수	감면자 비율
계	99	230,930	2406	1,631		7	189,861	1,529	1,162	
평균	10	23,093	241	163	68%	1	27,123	218	166	76%
가산	11	21,106	166	100	60%					
독1	9	22,817	204	134	66%					
독2	11	26,424	229	139	61%	1	30,000	253	160	63%
독3	10	25,000	244	181	74%	1	28,333	244	209	86%
독4	10	21,601	254	205	81%	1	28,333	240	185	77%
시1	7	23,721	165	108	65%	1	25,000	152	121	80%
시2	9	24,845	259	164	63%	1	26,667	224	167	75%
시3	11	17,053	210	141	67%					
시4	10	30,000	185	122	66%	1	25,000	206	152	74%
시5	12	18,363	490	337	69%	1	26,528	210	168	80%

### ○ 연 평균 수강료 감면 현황

(단위 : 백만원, % / 2023. 12. 기준)

동명	프로그램				체력단련실			
	강사료	실수입	감면분	감면분 비율	인건비	실수입	감면분	감면분 비율
계	486	398	229	37%	370	276	225	45%
평균	49	40	23	37%	53	39	32	45%
가산	61	29	14	33%	-	-	-	
독1	45	37	21	36%	-	-	-	
독2	62	48	25	34%	65	55	36	40%
독3	57	44	29	40%	47	42	41	49%
독4	49	46	32	41%	58	47	34	42%
시1	28	30	17	36%	24	25	20	44%
시2	49	51	26	34%	67	40	32	44%
시3	43	28	14	33%	-	-	-	
시4	56	42	25	37%	50	34	27	44%
시5	36	43	27	39%	59	32	34	52%

□ 자치구별 수강료 감면 적용현황

연번	자치구명	조례상 감면비율										비고 (실 적용)	
		수납자	한부모	유공자	장애인	경로우대	자원봉사자	다문화	다자녀	북이탈주민	병역면가		
1	강남구	50	50	50	50	50	-	-	50~100	-	50	문화센터 이관 장애인동행인 무료 7세이하 주민:30% 3강좌이상 :10% 1명당 2개 / 강남구 주민	
2	강동구	100	100	100	100		100		50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3	강북구	100	100	50	50	50	50		50			경로우대 : 70세 이상 하나만 적용	
4	강서구	100	100	50	50	50	20					경로우대 유예중 소상공인 간편결제 :10%	
5	관악구	100	100	100	100	100					100	동별 상이, 경로우대 미적용 보호조치아동 :100%	
6	광진구	100	100	100	100	50	20		50 (개정중)			광진구 주민, 중복불가	
7	구로구	100	100	100	100	50			50			보호조치아동 :100%	
<b>8</b>	<b>금천구</b>	<b>100</b>	<b>100</b>	<b>50</b>	<b>50</b>	<b>50</b>	<b>50</b>						
9	노원구	50 이내		50 이내	50 이내	30 이내			50 이내				10명미만 사업장 30% 1인당 1프로그램, 중복불가
10	도봉구	100	100	50	50	50			50			중복불가 / 청소년 :50%	
11	동대문구	100	100	50	50	50	20		50			중복불가 / 1인 2개 감면	
12	동작구	100		100	100	50							
13	마포구	100	100	100	100	100	20					미시행중	
14	서대문구	100	100	100	100	50	30					<b>조정가능</b> 서대문구 주민 / 통반장 100%	
15	서초구	100		50	50	50						2개동만 감면적용 동장추천 :100%	
16	성동구	100	100	100	100	50			50~100			동장추천 :50% / 중복불가 소상공인 간편결제 :10%	
17	성북구	100	100	50	50	20			50				
18	송파구	100 이내	100 이내	50 이내	50 이내	50 이내			50 이내			<b>범위 내 조정가능</b>	
19	양천구	100		100	100	50~100						양천구민 100%, / 관외 50% 동장추천 :100%	
20	영등포구	100	100	100	100	100						<b>조정가능</b> 보호조치아동 :100%	
21	용산구	100	100	100	100	50~100			50			75세이상 :100% 74세이하 :50% 용산구 주민, 중복불가	
22	은평구	100	100	100	100	50			20			18세 이하 :50%	
23	종로구	50	100	100	100	50			100 (3자녀)		50	종로구 주민 / 1명당 2개 소년소녀가장 : 100%	
24	중구	100	100	100	100	100						경로우대 :50%로개정중 소상공인간편결제 :10%	
25	중랑구	100	100	50	50	50			50~100		50		